

[분할합병에 따른 주식 병합 공고]

유니퀘스트 주식회사(이하 "당사")와 주식회사 드림텍(이하 "분할합병 상대회사")은 2023년 8월 1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 530 조의 2 에 의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 상대회사가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분할합병기일: 2023년 10월 1일).

분할합병 상대회사는 분할합병기일 현재 당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0.9247922 주의 비율로 분할합병 상대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을 지급합니다. 단, 당사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2023년 9월 27일) 현재 본건 분할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분할합병 상대회사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 440 조 내지 제 444 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본건 분할합병기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0.8328518 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위 비율은 주식병합 전 주식 1주당 주식병합 후 잔존하는 주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병합 후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한 당사 발행주식의 변경상장일의 증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당사 발행주식의 변경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당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이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65 조에 따라 주식의 병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1) 대상주식: 분할합병기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 (2)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2023년 09월 26일 ~ 2023년 10월 19일
- (3) 주식 병합 권리 기준일(분할합병기일): 2023년 10월 1일
- (4) 주식 병합 기준일(주식 병합 효력발생일): 2023년 10월 1일
- (5) 변경상장 예정일: 2023년 10월 20일

*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11일

유니퀘스트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4

대표이사 앤드류김